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실시 등〉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89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 개요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27.

다. 회 부 일 : 2024.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청취나 교육청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제도 내에서 교육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여 지역별로 실효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기본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u>중앙행정기관</u>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 ----- ----- <u>중앙행정기관</u>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 <u>시행계획</u>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u>(이하 “시·도”라 한다) <u>교육청</u>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u>시·도의 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u>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u>을 매년 수립한다. <신 설> <신 설>	⑥ ----- -----<u>시·도 교육청</u>----- ----- -----.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교육감</u>-----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u>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u>(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u>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 ⑥ (현행 제2항~제4항과 같음)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¹⁾(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은 피해학생 등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5년을 주기로 수립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²⁾임.

한편, 2008년 3월 14일 학교폭력예방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1) **학교폭력예방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참고자료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4] 개요」 참조.

수립하도록 하였으나³⁾, 전부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가 신설되었고 지역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⁴⁾되었음. 이에 따라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었음.

그러나, 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통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을 수행하고⁵⁾, 학교폭력예방법상 다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⁶⁾, 최근 각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등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3) 법률 제8852호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 (교육감의 임무) ①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5)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따라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교육감이 기본계획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3·4항),

지역위원회는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함)을 매년 수립하며, 시행계획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2항).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위원회(시·도)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예방대책의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시행계획과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감·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적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 교육부: 이견없음 - 학교폭력의 양상이 변화⁷⁾하고 교육청의 역할이 커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 학교폭력 대응,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기관, 병·의원 연계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및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함. - 시행계획·예방대책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필요함.
○ 강원, 경북, 세종, 인천, 제주, 충남 교육청: 신중검토 - 추진실적 제출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정기적 협의회를 통해 소통 가능함. 또한,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로 학교폭력 예방 실적을 제출 중이므로 추진실적 제출은 업무 중복임. - 현행 예방대책에 지자체, 시도교육청, 경찰청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각 시도교육청 및 시도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예방 및 대응책을 수립·시행 중임.
○ 전북도청: 일부수정 - '20년 가해학생 재심 기능이 지역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후 학교폭력 관련 예산도 삭감되어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예방대책 수립만 남아있음. - 시행계획(교육감)과 예방대책(광역지자체)을 별개로 수립하는 것보다 업무주관기관인 교육청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통일성이 있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84

7) '0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장소 비중은 교내보다 교외가 높았으나(신체폭력 또는 협박 73.22%, 금품갈취 85.34%가 학교 밖에서 발생), 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장소 70.9%가 '학교 안'이라 응답

Ⅲ. 정책 추진방향

비 전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목 표	◇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문화 ◇ 적극적 보호와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 민주시민의 성장을 돕는 가정과 사회		
5대 정책영역		14개 추진과제	
1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3	학교폭력 유형·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
		4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2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5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6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
		7	사안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3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8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강화
		9	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
4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10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11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
5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12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13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4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주요 신규 정책과제			
○ 일회성이 아닌 교과수업 시간에 실시할 수 있는 예방교육('교과연계 어울림') 확대 ○ 초등 학년군별(초1~2/초3~4/초5~6)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및 '사이버 어울림' 확산 ○ 학교급·폭력유형별 맞춤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보급 및 프로그램 활용 전문가 양성 ○ 피해학생 전달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피해학생 의견수렴·환류체계 구축추진 ○ 가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가해학생 조치 내실화 ○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자료: 교육부